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9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5.

발 의 자 : 임광현 · 정성호 · 임오경

진선미 • 박희승 • 박민규

이인영 · 황명선 · 최기상

박홍배 · 정태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0년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였음.

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 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1세대 2주 택자로서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게 되었음. 따라서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청장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에게 그 세액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 용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④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액에 대한 사전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1 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의2(공동명의 1주택자의 | 제10조의2(공동명의 1주택자의 |
|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) ① |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) ① |
| ~ ③ (생 략) |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④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|
| |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|
| |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|
|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|
| | 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|
| |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|
| | <u>야 한다.</u> |
| <u>④</u> 제1항부터 <u>제3항</u> 까지를 적 | <u>⑤</u> |
| 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 | |
| 세표준의 계산, 세율 및 세액, | |
|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 | |
| 산방식, 부과절차 및 그 밖에 | |
|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| |
| 정한다. | |